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10

「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주시 농촌지역의 저출산,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증가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시 사고위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임.
- 나. 이 조례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업작업 예방 및 지원대상 (안 제3조)
- 나. 전담부서의 설치 등 (안 제5조)
- 다. 예방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6조)
- 라.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 (안 제8조, 제9조)
- 마.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(안 제10조)
- 바. 재정지원 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9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ajaja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정소식 → 조례안 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